

경동 포레스트힐 행복주택 아미
입주자 추가모집(2차) 공고

2024. 1.31.



목 차

1. 안내사항	1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2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3
4. 공급일정	11
4-1. 공급신청서 신청접수	11
4-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1
4-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안내	12
5. 당첨자 발표	17
6. 계약안내	17
7. 주택 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검증기준	18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등	23
9. 단지 유의사항 안내	26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29
11.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29
12. 위치 안내	29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4 - 15호]

경동 포레스트힐 행복주택 아미 입주자 추가모집(2차)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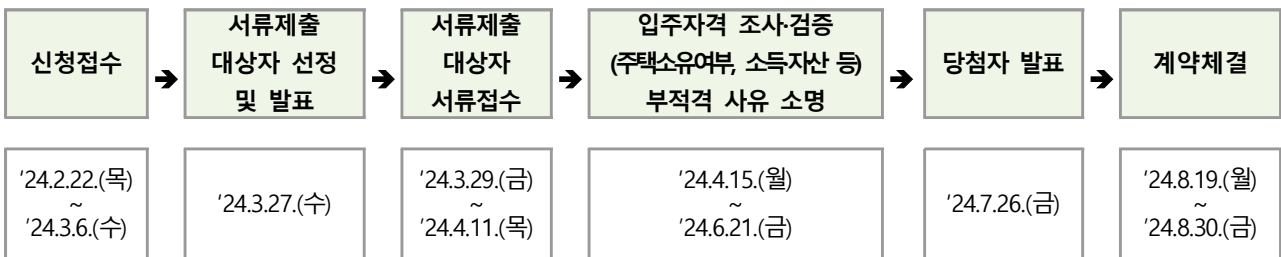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4.1.31.]

1

안내사항

-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 173번길 29 (767세대)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31.) 현재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순위판단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아미 행복주택에 기존 거주 중인 계약자는 동일한 공급평형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은 **전자청약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청약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공사방문 시(구비서류 지참) 청약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입주예정일 등 공급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연기 등으로 인해 변경(연장)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공급일정



※ 계약체결, 입주예정일 등 공급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연기 등으로 인해 변경(연장)될 수 있습니다.

■ 상담 관련 유의사항

- 부산도시공사는 입주자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되오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공급 평형	공급계층	모집호수		공급면적(㎡)					무상옵션 반영여부			
		입주자 합계	예비입주자 합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주차장	기타 공용	합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기 쿱탑
		148	148									
29A (29)	대학생	33	33	29.4166	14.3983	19.6998	2.3771	65.8918	O	X	X	O
	청년	4	4									
	고령자	50	50									
36A (36A,C)	대학생	22	22	36.7895	17.4467	24.6373	2.9728	81.8463				
36B (36B)	주거급여 수급자	8	8	36.7854	17.4196	24.6346	2.9724	81.8120				
45A (45A,B)	신혼부부	26	26	45.3244	21.0824	30.3530	3.6625	100.4223				
59A (59A,B)	신혼부부	5	5	59.9560	27.4365	40.1516	4.8448	132.3889				

◆ 임대조건(보증금 및 월임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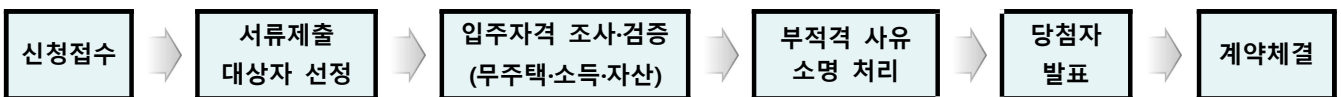
공급 평형	공급계층	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원)	보증금 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9A (29)	대학생	20,740,000	4,148,000	16,592,000	84,600	±6,222,000	26,962,000	53,400	
	청년	소득無	20,740,000	4,148,000	16,592,000	84,600	±6,222,000	14,518,000	102,700
								26,962,000	53,400
		소득有	21,960,000	4,392,000	17,568,000	89,600	±6,588,000	28,548,000	56,600
	고령자	23,180,000	4,636,000	18,544,000	94,600	±6,954,000	15,372,000	108,800	
36A (36A,C)	대학생	26,520,000	5,304,000	21,216,000	108,200	±7,956,000	30,134,000	59,800	
36B (36B)	주거급여수급자	23,400,000	4,680,000	18,720,000	95,500	±7,020,000	34,476,000	68,400	
45A (45A,B)	신혼부부	38,800,000	7,760,000	31,040,000	158,400	±11,640,000	18,564,000	131,400	
59A (59A,B)	신혼부부	51,600,000	10,320,000	41,280,000	210,700	±15,480,000	30,420,000	60,400	
							16,380,000	115,900	
							50,440,000	100,200	
							27,160,000	192,300	
							67,080,000	133,300	
							36,120,000	255,800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이 적용됩니다.
- 청년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며,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신청유형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는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공고 후 기존 입주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공가 세대수가 변동될 경우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평형별로 청약미달인 공급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계층에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할 수 있습니다.(29A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자 모집호수에 해당하는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주택 발생시 순위에 따라 계약(동호배정 전산추첨)을 체결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계층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무상옵션 품목 중 세탁기와 냉장고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급형별·공급계층별 임대보증금의 20% 금액(보증금 전환시 전환된 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임대차 재계약시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표에 정해진 금액구간으로 전환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계약시 별도 안내드리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며 예비입주자 공급시 제외처리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자격별 **해당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고문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 입주자격 조사결과(주택소유, 소득자산 등)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계층(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중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년계층의 사회초년생 일반자격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와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자격 중 “주택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㉒와 ②~④)

- ①-㉓ (대 학 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①-㉒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6인	8,701,639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순위

선순위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산광역시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시설 포함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유의사항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하던 부 또는 모를 의미합니다.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여 인정학력 취득시점을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하며,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024.1.31.) 현재 합격증명서를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결격 처리됩니다.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은 ①-㉓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㉒와 ②~⑤)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4.2.1. ~ 2005.1.31.)
- ①-㉒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기간 내여야 함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6인	8,701,639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024,661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순위

선순위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산광역시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시설 포함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유의사항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①-㉔ 1)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을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면적, 동일유형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①-㉔ 2)의 '퇴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 ①-㉔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
- ▷ 청년 계층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 됩니다.

3-3.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과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과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과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2,555일)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단, 가구원수 2인인 경우 110퍼센트, 맞벌이 부부일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505,914원 이하	110%	6,506,989원 이하	130%
3인	6,718,198원 이하	100%	8,061,838원 이하	120%
4인	7,622,056원 이하	100%	9,146,467원 이하	120%
5인	8,040,492원 이하	100%	9,648,590원 이하	120%
6인	8,701,639원 이하	100%	10,441,967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유의사항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해당주택 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혼인기간(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재혼한 경우 재혼 전 혼인기간 포함)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 관계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하여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중 발급 가능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계층으로 신청 불가)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6인	8,701,639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공급신청서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p>전자청약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기간 : '24.2.22.(목) 10:00 ~ '24.3.6.(수) 16:00 ※ 24시간 접수가능 (단, 시작, 마감일 제외) 	<p>전자청약 접수</p> <p>방문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일: '24.3.27.(수), 17시 이후 장소: 공사 홈페이지, BMC 전자청약 	<p>전자청약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 모든 신청서류 기간 : '24.3.29.(금) 10:00 ~ '24.4.11.(목) 17:00 <p>방문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 모든 신청서류 기간 : '24.4.4.(목) 10:00 ~ '24.4.11.(목) 17:00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p>전자청약 접수</p> <p>방문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일: '24.7.26.(금), 17시 이후 장소: 공사 홈페이지, BMC 전자청약 <p>※사회보장시스템 자격 검증 처리기간(2~3개월 소요)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부적격자 소명을 거친 후 당첨자 발표함 연기시 별도 안내</p>	<p>전자청약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24.8.19.(월) 10:00 ~ '24.8.30.(금) 16:00 <p>방문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24.8.26.(월) 10:00 ~ '24.8.30.(금) 16:00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p>방문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기간 : '24.3.4.(월) 10:00 ~ '24.3.6.(수) 16:00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상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4-1

공급신청서 신청접수

◆ 전자청약 접수

- 청약방법 :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청약신청
- 신청기간 : 2024. 2.22.(목) 10:00 ~ 3. 6.(수) 16:00 ※ 인터넷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간편인증 로그인(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뱅크샐러드 인증서)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 대 상 자 :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신청자본인이 공사 방문 접수 가능(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 신청기간 : 2024. 3. 4.(월) 10:00 ~ 3. 6.(수) 16:00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접수처

4-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대 상 자 :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집세대의 3배수 내외로 대상자 선정
- 발 표 일 : 2024. 3.27.(수) 17:00 이후
- 조회방법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문 상 요구된 모든 제출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4-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공통 제출서류

- 전자청약 접수 : 2024. 3.29.(금) 10:00 ~ 4.11.(목) 17:00
- 방문 접수 : 2024. 4. 4.(목) 10:00 ~ 4.11.(목) 17:00

제출서류	비고	부수
행복주택 신청서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불임첨부(공급신청서) 작성 제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단, 월평균소득 기준적용을 위한 가구원에 산정되는 추가 세대구성원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만 추가, 세대구성원도 서명(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는 미포함)]	1부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자녀이름 정자로 기재) • 동의방법 : 정보제공 동의서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이 한글 정자 서명 또는 인감날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주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 시 행복주택 신청접수 등 불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부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부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부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중 1가지 서류 추가제출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부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확인서, 임신사실확인서 등 임신진단서 외 서류 인정불가	1부

◆ 방문 접수 시(제출서류 구비) 본인 등 확인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공통서류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③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공급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계층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교 졸업유예자 : 졸업유예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순위 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 보호종료아동 증빙서류 (퇴소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②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증명서 (주민센터) 중 한가지 서류 (퇴소예정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각서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입주시까지) ③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증명서 (주민센터) 중 한가지 서류(입주시까지)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용도) • 부모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세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발급해 제출) 	주민센터

공급계층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하며 혼입 합산기간 확인을 위해서 제출 필요 당사자(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위임장(대표신청자에게 위임 - 위임자 : 예비배우자 / 수임자 : 대표신청자)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와 위임장 상의 서명방식에 맞게 제출 ▷ 인감날인 시 :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본인발급본 인감증명서 ▷ 자필서명 시 :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 및 자필서명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해야 함 <입주 시 제출>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주민센터 부 산 도 시 공 사 홈페이지 https://www.mc.busan.kr/
		해당자	<p>[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추가 제출 <p>[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가입', '미가입자'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위촉증명서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p><입주 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주거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 1.31.)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 (X)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의 서명란에는 개인 사인이 아닌 **본인의 이름을 한글 정자로 기입한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접수기간
 (전자청약 접수) 2024. 3.29.(금) 10:00 ~ 4.11.(목) 17:00 업로드까지 유효하게 접수
 (방문 접수) 2024. 4. 4.(목) 10:00 ~ 4.11.(목) 17:00 *토·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전자청약 접수)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서류제출대상조회/서류제출
 (방문 접수) 부산도시공사 1층 접수처
- 서류제출 대상자는 2024. 3.27.(수) 17시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에 미제출할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을 통해 BMC 청약센터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해당 접수 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사진촬영 업로드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사진 촬영보다는 스캔파일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서류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병합 제출 권장)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파일 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며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당부 드립니다.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자산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051) 810 - 9901 ~ 9904 (평일 10:00~17:00 운영 /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되오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공급계층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발표

- 발 표 일 : 2024. 7.26.(금) 17:00 이후
- 당첨확인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변경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변경)될 수 있으며, 연기(변경) 시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에 별도로 안내됩니다.

◆ 예비입주자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6

계약안내

◆ 전자계약

- 일 정 : 2024. 8.19.(월) ~ 8.30.(금) 10:00 ~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 ※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 대 상 자 :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신청자본인이 공사 방문 계약 가능(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 간 : 2024. 8.26.(월) ~ 8.30.(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계약처
 - ※ 세부일정 및 장소는 개별안내 예정

○ 구비서류

공통서류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①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이 가능한 통장 등 ② 계약자의 도장(본인 방문 시 서명가능) ③ 계약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④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공사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계약금을 납부했다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점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동차·자산(금융자산 포함)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7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 확인
- 검증대상 :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소유의 범위
 -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 체결일
 -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신청자가 속산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 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 소득기준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구 분	1인 가구(+20%)	2인 가구(+10%)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4,024,661원	5,505,914원	6,718,198원	7,622,056원	8,040,492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30%)	3인 가구(+20%)	4인 가구(+20%)	5인 가구(+20%)
신혼부부(맞벌이)	-	6,506,989원	8,061,838원	9,146,467원	9,648,590원

- ▷ 월평균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1인가구는 기준금액에 20%, 2인가구는 기준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인정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구분		자산기준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산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 (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기준

-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계층·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 소득	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 이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종합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토부 차적정보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지방세정 자료
		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입목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어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금융자산	분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주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일 경우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 상가 등의 임차인으로 전·월세를 내는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해당 없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결격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처리 되며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 있습니다.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등

관련항목	유의사항														
<p>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p>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20 479 1437 595">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계층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계층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계층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계층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p>갱신계약 등</p>	<p>■ 갱신계약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자격은 공급계층별 일반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의 요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계층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동호변경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계층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20 1592 1437 1783">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 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중 청년계층의 소득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갱신 계약 시 주택소유 및 자동차·자산 기준초과 시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 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 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p>중복입주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부산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모집공고일(2024.1.31.)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계층별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만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근거하여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31.)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기납부한 계약금 위약금 공제 후 환불)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계층별 예비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계층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되실 경우 종전 신청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공간)을 설치하여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갱신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경하는 집”의 운영 대여 등)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 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청약 시 기재하지 못한 태아, 자녀 수는 소득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제외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주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차료 분을 임대인(부산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임차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 금액이 없을 수 있음)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

단지 유의사항 안내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에 따라 팸플릿 등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 내부설계, 외·내부 시설물의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과정이나 관련법규 개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마감재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정화조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팬 또는 환기탑(DRY AREA), 배관 등이 일부 동주변과 옥상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발생하는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됩니다.
- 방범용 CCTV는 주차장, 1층 승강기 홀, 승강기 내부, 1층 계단실, 쓰레기보관소,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1층 공동현관 주출입구, 옥상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사업자 소관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행복쉼터, 산책로,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보행로, 소방도로, 보행가로변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차량출차 주의등과 주차장내 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부분 계단실 등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 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의 파손·고장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등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며, 가스용도는 난방용입니다.
- 발코니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승강기, 경비실, 지하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복리시설은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행복쉼터 등이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통로구간 2.3m, 주차구간 2.1m입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계획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목의 수종·규격, 시설물, 포장 등), 저층부 외벽마감, 동현관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인하여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여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에는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흡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하여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해당 지역부근에 분류식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및 상가의 정화조 설치로 인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실외기 시공으로 인한 소음 및 열교환을 통한 발코니 실내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싱크대 하부장과 레인지후드 상부장은 각종 장비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에 보일러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여유 공간이 부족하므로 세탁기 등의 설치 가능 용량 및 간섭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 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은 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은 안전과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팸플릿 등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가 개별 설치 시 천장에 각종 매립배관이 위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미거주시 원상태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와 침실사이 벽체는 내력벽이므로 벽체철거 및 추가 확장공사는 관련법에 의거 불가합니다.
- 이사 지정일 외에는 입주 전까지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무단으로 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추가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감리금액	난방방식
경동 포레스트힐 행복주택 아미	부산도시공사, 경동건설(주) 외3개사	경동건설(주) 외 3개사	철근 콘크리트	경동건설(주) 외 3개사	(주)무영씨엠 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4,874,298천원	개별난방

11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성능부문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단열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조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
고효율기자재	적용	- 가정용보일러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 전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공용부위 :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 세대 각 실 : 실내온도조절기 설치
절수 설비	적용	- 세대 내 수전류 : 절수형 설비 설치

12 경동 포레스트힐 행복주택 아미 위치 안내

◆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 173번길 29

아래 그림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로 청약신청 전 인터넷 지도 서비스 및 단지 주변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단지 위치 및 거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문의	○ 문의처 : 051) 810 - 9901 ~ 9904 ○ 사이버 모델하우스 (busanami4bmc.com), ○ 공고문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bmc.busan.kr)
당첨자 발표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bmc.busan.kr)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고객만족센터-익명신고」에 제보 및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유형
1.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2. 부당이득 수수행위
 3. 정보보안관련 위반행위
 4.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5. 개선사항 건의 및 직원칭찬
 6. 비윤리 행위 갑질행위 및 인권침해
 7. 공정거래 저해 행위

2024. 1.31.

부산도시공사 사장